



사례를 통해 본 독점금지법 vs 지적재산권

디지털콘텐츠와 기술적 보호조치

MP3, DVD, P2P 등 디지털 매체기술의 발달은 디지털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을 급속도로 증가시켰고 일반 대중은 다양한 창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는 복제물을 쉽고 빠르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생성하게 하였고, 또한 디지털콘텐츠는 한 번 전송되고 나면 그 침해를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가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창작한 저작물을 무단복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기법, 디지털워터마크 등 기술적 조치(technological measures)를 개발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접근제한시스템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인정해 온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입법취지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증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 관련 법률조항 및 주요 법적 쟁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글 손승우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measures)란 저작물의 무단복제 및 배포 등의 불법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수단 또는 통제장치를 말한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유형에는 그 보호방법에 따라 경고형, 복제 및 변경 확인형, 사용통제형,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음악,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컴퓨터프로그램 기술적 보호조치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또한 매체기술에 따라 플로피디스크, MP3, CATV시청, DVD, CD 복제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예로서 저작물의 안전한 전달과 사용을 통제하는 DRM(Digital Right Management) 기술, 불법 복제물의 탐색 및 색출을 위한 탐색 엔진(Search Engine) 기술, PC나 서버로부터 휴대용기기로 저작물을 보내는 경우 불법복제 및 사용을 막기 위한 복제관리(Copy Control Information) 기술, 불법 사용되고 있는 저작물로부터 저작권 정보를 추출해 증거로서 제출하거나 복제를 방지하는 디지털 워터마킹(watermarking) 기술이 있고, 이외에도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 디지털 인증 기술, 비밀번호 등

연재순서

7 디지털콘텐츠와 기술적 보호조치

8 BM 특허

9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10 P2P 분쟁 -소리바다사건-

11 하이퍼링크의 법적 문제

12 SW 입차제도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규율은 크게 '복제에 대한 통제(copy control)'와 '저작물에 대한 접근통제(access control)'로 구분할 수 있다. '복제통제(copy control)'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은 허용하지만 저작물의 복제 또는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대상으로 한다.

이 있다(최종욱,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 기술, 5쪽).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규율은 크게 '복제에 대한 통제(copy control)'와 '저작물에 대한 접근통제(access control)'로 구분할 수 있다. '복제통제(copy control)'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은 허용하지만 저작물의 복제 또는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속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대표적인 예로서 음악CD의 SCMS와 DVD 소프트웨어의 CGMS(Copy Generation Management System) 등이 있으며, 복제의 수량, 질, 완성도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보호한다(한국 디지털재산법학회, 디지털콘텐츠의 기술 보호조치보호방안에 대한 연구, 2001, 24~32쪽).

'접근통제(access control)'는 디지털 콘텐츠 자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접근하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을 통해 저작물에 접근하는 과정에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기술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통제 기술의 대

표적인 예가 비밀번호를 이용한 최초의 접근통제이다. 또 유료TV복호기(pay-TV decoder)와 같이 이용자의 사적 영역 내에서 접근통제를 할 수 있으며, 이미 구입된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도 있다(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효과적인 S/W 보호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상), 2004, 118~119쪽).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

저작권법 제2조 제20호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92조 제2항에서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기술을 거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동법 제98조).

또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로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그리고 동법 제30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동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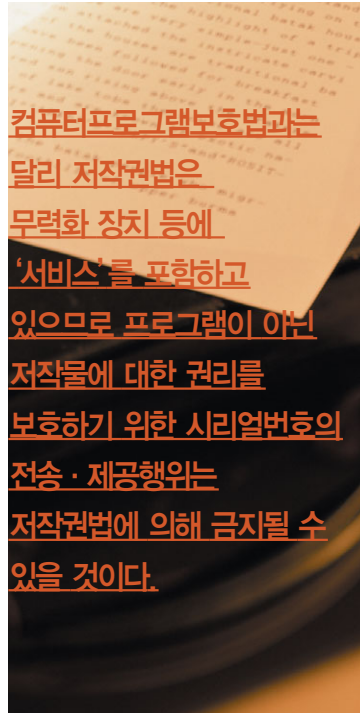
있다.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6조).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법 모두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위한 기술, 장치 등의 거래·배포 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양법 모두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copy control)에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access control)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는 우리나라 저작권법과는 달리 접근통제권(access control right)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게 디지털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DMCA의 이러한 입법에 대하여 많은 학자와 소비자단체 등은 전통적으로 저작권법이 일반 공중에게 부여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의 자유를 이법이 상당히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 인하여 저작권자와 공중의 이익간의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e.g., Pamela Samuelson & Suzanne Scotchmer, The Law and Economics of Reverse Engineering, 111 Yale L.J. 1575 (2002)).

시리얼번호(Serial Number) 복제 사건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 2900 판결-

피고인은 1998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 피해자가 1999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관리 프로그램인 'Hypersnap-Dx'의 비밀번호(시리얼번호)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배포했다.



대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시리얼번호를 프로그램의 설치 또는 사용권한을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시리얼번호는 컴퓨터프로그램에 그것을 입력하면 인스턴스를 진행하도록 하는 지시, 명령이 표현된 데이터에 불과하므로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 행위 자체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공표, 복제, 전송 등에 해당하지 아니해 프로그램저작권이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복제·배포된 시리얼번호를 사용하여 타인이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그 행위가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해 처벌된다면 경우에 따라 저작권침해행위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2001년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도입되기 이전의 구법을 적용해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시리얼번호가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함을 명백히 하고 있으나 그것을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의 제2항의 규제 대상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도구인 기기·장치·부품, 프로그램 또는 기술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시리얼번호가 현행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력화 도구

의 구체적인 예에 해당되는지는 의문이다(문용호, 디지털저작물과 기술적 보호조치, p.15).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달리 저작권법은 무력화 장치 등에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이 아닌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리얼번호의 전송·제공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될 수 있을 것이다.

Reimerdes 사건

-Universal City Studios, Inc. v. Reimerdes, 111 F.Supp.2d 294 (S.D.N.Y. 2000)-

원고들(Universal City Studios 등)은 DVD영화 배포권자들로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복제를 방지하고 또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CSS라는 DVD복제방지시스템을 고안해 영화저작물을 유통했다. 몇 년 후 컴퓨터 해커들(computer hackers)은 CSS암호화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VD영상물을 복제하여 플레이할 수 있는 윈도 호환 소프트웨어인 DeCSS를 고안해 냈다.

피고 Eric Corley는 잡지사 편집장으로서 웹사이트 상에 DeCSS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DeCSS를 다운로드(download)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링크를 해뒀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도구의 거래에 해당되며 이는 DMCA 제1201조(a)(2)를 위반한 것으로 그 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금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하급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DeCSS는 CSS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그램임을 인정했다.

피고의 여러 가지 항변 중의 하나로, 과거 Betamax 사건(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464 U.S. 417 (1984))에서 대법원은 비디오 기계에 복제기능을 장착시킨 소니사를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소니의 공정이용(fair use) 항변을 인정한 점을 들고 있다. 즉 비디오 장치에 복제기능을 장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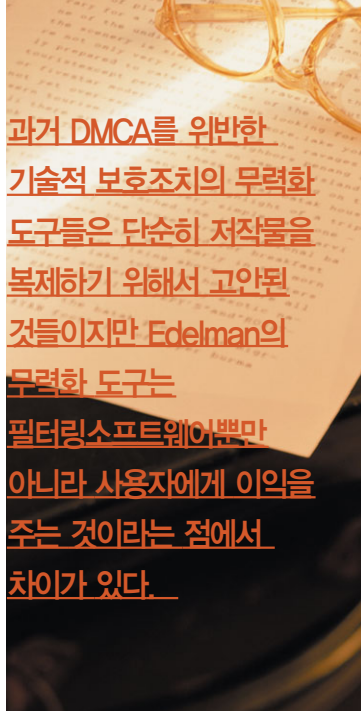
한 것이나 DVD콘텐츠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은 모두 적법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며 상호 기술만 다를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공정이용의 원리에 따라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동 법원은 Betamax사건과 DeCSS 사건을 구분하면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무력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정이용원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즉 법원은 DeCSS가 DVD영화 감상과 같은 합법적인 이용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불법복제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DMCA 규정에 대한 엄격한 문언적 해석에 충실함으로써 DeCSS의 합법적 사용가능성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delman v. N2H2 사건

-Edelman v. N2H2, Inc., No. 02-CV-11503 (D. Mass. filed July 25, 2002)-

피고 N2H2사는 인터넷 필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업체이다. 피고가 개발한 필터링프로그램(Bess)은 포르노그래픽, 마약, 경매, 도박, 주류, 인종차별 등 유해성 웹사이트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사이트들을 식별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현재 미국 전역의 약 40%의 학교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공공 도서관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원고 Edelman은 컴퓨터 연구원으로서 하버드 법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 Edelman은 문제의 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그 필터링프로그램이 유해성 웹사이트와는 전혀 무관한 웹사이트까지도 필터링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동 프로그램상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고 또한 역 분석(reverse engineering)을 통해 그 오류를 분석했다. 그리고 원고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온라인상에서 배포



했다. 피고의 프로그램에 의해 잘못된 분류된 웹사이트의 예를 들어 보면 비영리단체인 IRIS Center Romania의 웹사이트, Wales지역의 소방서 웹사이트, 국제 열기구 축제 웹사이트, 전국자원봉사자센터 웹사이트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필터링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계약상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Edelman은 연구의 일환으로 행한 자신의 행위는 공정이용(fair use)으로서 DMCA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도구를 배포한 행위도 피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필터링프로그램이 보다 정확히 작동할 수 있게끔 했으므로 DMCA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delman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N2H2사의 미래의 잠재적 제소위협으로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부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N2H2사는 Edelman이 필터링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제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Edelman은 여전히 소이익이 있음을 주장했지만 아쉽게도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받아들여 소를 기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개인에 불과한 Edelman이 연구를 계속하는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며 실제 Edelman은 필터링 프로그램의 오류에 대한 연구를 더 이상 진척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비록 법원이 Edelman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도구의 배포행위에 대한 위법성판단을 가리지 못했지만 과거 사례와는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예컨대, 과거 DMCA를 위반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도구들은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들이지만 Edelman의 무력화 도구는 필터링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제1항 각호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② 동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③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④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⑥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더라도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자체에 한정해 적용되는 것으로, Edelman의 경우와 같이 무력화 도구를 배포·전송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도구의 배포·전송행위가 연구목적으로 행해졌고 그것이 저작권자와 일반 대중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제재에 대한 예외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